

## 행정 처분(검토)조서

상호 및 대표		대상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효성중공업(주)  대표 김동우, 요코타타케시		산업설비공사업 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공덕동)
조사동기	근거	안양시 하수과-14490호(2020.10.22.)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요청」	
	내용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  - 현장명 : 안양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 처분근거 :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 처분요청 : 영업정지 또는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공동수급 현황 : 대림건설(주)(45%), (주)한화건설(20%), 씨앤씨종합건설(주)(15%), 효성중공업(주)(10%), 한동건설(주)(10%)	
검토결과	조사결과	안양시에서 승소한 판결은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설물의 구조부에 대한 부실시공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함	
	검토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113호(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주관사인 대림건설(주)의 등록관청(인천시) 처분결과에 따름	
	검토결과	처분제외	
증거서류		위 조사동기 관련 공문 등	
작성자 : 주무관 박지영			